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전국다문화가족자녀이중언어대회’ (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강점 강화 및 국제적 인적자원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을 위해 엄마에게 배우는 엄마나라 문화이해 및 언어습득 환경을 조성하며 이중언어 대회 전국 개최를 통해 다문화인재양성·다문화정책의 메카로서의 경상북도의 위상을 고취하고자 하며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3조(참가자격 및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로 대한민국 거주 만7세 ~ 18세 또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이주배경을 가진 자

제4조(자격 제외사항)

1. 최근 2년 이내 전국단위 이중언어(외국어말하기)대회에서 2위권 이상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참가 언어가 다른 경우는 가능)
2. 중도입국자녀로 국내 입국 3년 이상 되지 않은 사람

제5조(경연 방법)

1. 각 분야별 주제로 6분 이내 발표 (한국어 3분, 어머니(아버지)나라 언어 3분)
2. 영어는 제외하며 원고 분량 각 3분으로 엄격히 제한함.
3. 원고 내용에 동요부르기 참가 불가함.

제6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1. 본 대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대회 심사기준은 문장력과 발표력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력은 총점 30점 기준으로 한국어와 이중언어의 문장이 참신하고 주제에 부합하는지, 문법

적으로 적절한지 원고심사와 동영상 평가를 통해 결선진출자 선발 및 점수 부여한다.

- ② 결선대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표현력은 총점 70점으로 언어적으로 서술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전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자의 태도와 발음, 청중과의 교감을 통해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 ③ 전 참여자 결선 당일 현장 인터뷰를 통해 가점을 부여한다.
-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어 부분과 이중언어 부분은 별도로 평가한다.
- ⑤ 항목별 심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 방법	평가 영역	채점 영역	심사내용	점수
원고 심사	문장력 (30점)	가	주제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가?	10
		나	내용이 감동과 공감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전달되는가?	10
		다	이중언어 모두 표현이 정확하고 문법적으로 적절한가?	10
현장 심사	발표력 (70점)	라	원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발표하는가?	20
		마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가?	20
		바	발표자의 자세가 안정적이며 태도가 진지하고 적극적인가?	10
		사	표현 및 전달 방법이 효과적이며 참신한가?	10
		아	청중들과 교감을 하고 반응이 좋은가?	10
합 계				100

제7조 (수상자 결정)

1.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을 획득한 참가자 순으로 수상이 결정됨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순)
2. 채점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고학년 순,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3. 수상자 수와 상의 종류는 참여자의 수준과 동일점수자 발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8조 (기타사항)

1.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발생 시 경상북도,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회 대회 심사위원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